

2021년도 경기도 (재)경기콘텐츠진흥원 판교경기문화창조허브 가상오피스지원 사업 안내

창업가 여러분의 행보에 찬사를 보냅니다. 경기도와 (재)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문화콘텐츠산업 창업활성화를 목적으로 사무 공간 확보가 열악한 초기단계 창업(예비)자를 대상으로 창업 공간 및 우편함 지원 등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지원, 일명 가상오피스 지원을 시행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1년 8월 9일
(재)경기콘텐츠진흥원장

1. 모집개요

가. 모집대상 : 문화콘텐츠산업 창업(예비)자 중 개인사업자

나. 참여조건

- (1) 경기도내 주소지 사업자등록(예정)자
- (2) 문화콘텐츠산업 창업(예정)자 ※ 붙임 참조
- (3) 개인사업자등록(예정)자 (※법인사업자 제외)
- (4) 창업수행 사무공간으로 스마트오피스 이용이 절실히 필요한 자
- (5) 지원 대상자 통보 후 15일 이내 사업자 주소지 등록·이전 완료가 가능한 자
- (6) 모집 마감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기업
- (7) 접수일 현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9층(삼평동,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 제출서류

- (1) 가상오피스 지원 신청서 [제1호 서식] (반드시 작성, 날인 후 스캔 본 제출)
- (2) 개인정보 제공 및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제2호 서식] (반드시 작성, 날인 후 스캔 본 제출)
- (3)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발급 후 제출), 전체이력

라. 지원 대상 업종

- (1)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작성하는 정부승인통계인 ‘콘텐츠 산업통계’에 따라 총 12개 분야 및 ICT융복합 분야
- (2) 신청서 작성 시 지원 대상 업종표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의 정의를 참고하여 해당 대분류 선택.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유사 분야를 선택하시거나 혹은 기타분야로서 상세히 기재

※ 아래 붙임 [참고]지원 대상 업종 분류 참조

2. 지원내용

가. 비상주 사업자등록 주소지 사용 허가

- (1) 사업자등록 시 사업장 소재(주소지) 사용 ※ 주소지 : 판교 경기 문화 창조허브
- (2) 사업자등록을 위한 스마트오피스 임대차 계약서 ※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1년

나. 사용대차 내용

- (1) 스마트오피스 개인좌석(3.3㎡) ※ 공용좌석으로 지정석은 아님
- (2) 가상오피스 우편함 ※ 지원 대상 선정 창업(예정)자에 한하여 우편함 지정 제공

다. 사용대차 비용 : 무상

3. 지원 조건

가. 가상오피스 지원에 따른 계약체결

나.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담당자가 요청한 기간 내에 판교 경기 문화 창조허브로 사업자 주소지 등록(변경) 후 사업자 등록증 제출

다. 임대차 계약 기간 중 필요한 경우 대면상담 또는 서면을 통한 창업수행 현황 보고서 제출

- (1) 창업기업 구성원(명)수
- (2) 당월 매출실적
- (3) 사업자등록현황
- (4) 기타 창업수행 관련 재단이 요구하는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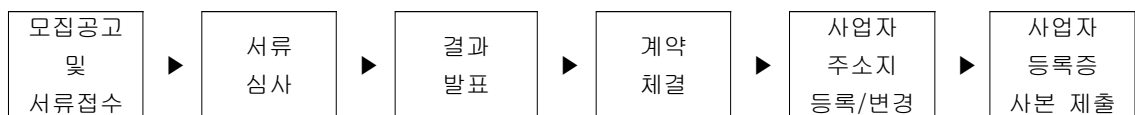
※ 가상오피스 지원 신청자 중 이미 사업자등록(개인)을 소지한 창업자는 지원계약 체결 후, 사업장 소재(주소지)를 반드시 판교 경기 문화 창조허브로 변경해야 함

라. 사업영위 변경사항 통보(폐업, 이전, 업체 명 변경, 법인 설립 등) 사업영위 변경 시, 지체 없이 즉시 통보 하여야 함

※ 미 통보 시 불이익 또는 제재

4. 선발체계

가. 심사/발표 절차



나. 접수기간 : 2021년 8월 9일(월) ~ 2021년 8월 23일(월) 15:00까지 (15일간)

※ 제출 기간 내에 접수된 신청서만 유효함

다. 관련서식 다운로드

- ① 경기문화창조허브 : www.gcon.or.kr/ghub 예약신청 → 프로그램 → 판교

5. 신청 방법

가. 관련서식 다운로드 후 서면 작성하여 홈페이지 내 제출

- ① 지원안내 숙지 후 관련 서식에 의거하여 신청서 작성 및 날인
※ 계약체결 시 사용될 동일한 도장 날인 필수, 서명 불가
- ② 재단이 요구하는 증빙자료 구비 ※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③ 작성/날인 문서 및 증빙서류를 각각의 PDF 파일로 변환 ※ 이미지 파일 불가
- ④ 경기문화창조허브 내 신청페이지(예약신청 > 프로그램)로 제출 ※ 제출 기한 엄수

6. 제출 방법

가. 제출 방법 : 경기문화창조허브 홈페이지 내 예약신청 > 프로그램 > 판교 접수

나. 제출 제목 : [가상오피스지원] 성명(기업명)

다. 제출 서류 : 여러 개의 PDF 파일을 하나의 압축 형식(ZIP)으로 제출

※ 유의사항

· 계약체결 시 사용될 동일한 도장 날인 필수, 서명 불가

- 제출하는 모든 날인 본 서식과 증빙자료는 지원 대상 선정 후 계약체결 시 원본 제출
- 신청 시 안내문을 숙지하여 제출이 미비한 서류 및 내용이 없도록 유의
- 가급적 컴퓨터로 서류 작성, 서류 미비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스캔 서류는 스캐너 또는 파일 변환해야 함. 이미지 파일 불가

7. 선정 및 발표

가. 결과 통보 : 2021년 8월 27일 예정

나. 임대차계약 체결 : 2021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예정(계약 체결 기한 준수)

다. 사업자등록 신규/변경 제출 : 임대차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신규/변경 사업자
등록 제출(기한 준수)

※ 유의사항

- 선정 대상자 개별통보, 모든 일정은 진흥원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나. 관련 문의처 : 판교클러스터센터 판교경기문화창조허브 가상오피스 담당자

Tel. 031-776-4615

제1부, 조사 방법

표 1-2-1 콘텐츠산업 특수분류(2016년 조사 적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 정의	
출판 산업	출판업	서적 출판업 (종이매체출판업)	신문, 잡지, 교과서(학습서적) 및 정기간행물을 제외한 각종 서적과 서적 성격의 팜플렛을 출판하는 사업체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초등, 중등, 고등, 대학교 교과서 및 어린이 학습지 등의 서적 출판을 하는 사업체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제작업	단행본, 간행물, 전자출판물을 별도의 뷰어 또는 플레이어를 설치 및 실행하여 볼 수 있도록 제작하는 사업체 (e-book제작 등)	
	출판 산업	출판업	신문 발행업	사회전반을 다루는 것을 말하지만, 일간, 주간, 순간으로 발행(기관지, 전문지, 일반 상입지)하는 사업체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전문적인 내용 또는 일반적인 내용에 관한 주간, 순간, 월간, 연간 등의 잡지 및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는 사업체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부동산, 중고품 등 각종 상품 거래 안내, 산업활동 안내, 구인·구직 등에 관한 정기적인 광고간행물을 발행하는 사업체
		기타 인쇄물 출판업	위의 소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서적 또는 인쇄물을 출판하는 사업체	
	인쇄업	인쇄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종 출판물을 각종 재판술에 의하여 인쇄하는 사업체 (광고물 제외)	
	출판 도소매업	출판 도소매업	서적 및 잡지류 도매업	각종 서적 및 잡지류를 도매하는 사업체(만화 제외)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각종 서적 및 잡지류를 소매하는 사업체(만화 제외)
계약배달 판매업 (신문배달판매)			신문 및 정기간행물을 배달하는 사업체 : 외부자료 인용(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2015)	
온라인 출판 유통업	인터넷/모바일 전자출판서비스업	출판물을 전산화하여 제작된 전자출판물을 서비스하는 사업체		
출판 임대업	서적임대업(만화제외)	각종 서적, 정기간행물, 잡지 등 인쇄기록물을 임대하는 사업체(만화 제외)		
만화 산업	만화 출판업	만화 출판사(만화잡지, 일일만화, 코믹스 등)	만화잡지를 포함하여 만화도서를 전문으로 발간하는 출판사(만화 전문으로 하는 학산, 대원씨아이, 서울문화사 등)	
		일반 출판사(만화부문)	일반 도서를 발간하는 출판사 중 만화도서(학습/교양만화 포함)를 발간하는 출판사 (일반 출판사의 만화 출판)	
	온라인 만화 제작· 유통업	인터넷/모바일 만화 콘텐츠 제작 및 제공(CP)	단행본 만화, 만화잡지 등을 인터넷/모바일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사업체	
		인터넷 만화콘텐츠 서비스	단행본만화 또는 만화잡지 등 전자출판물 형태로 제작된 콘텐츠를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사업체	
		모바일 만화콘텐츠 서비스	단행본만화 또는 만화잡지 등 전자출판물 형태로 제작된 콘텐츠를 모바일로 서비스 하는 사업체	
	만화책 임대업	만화임대(만화방, 만화카페 등)	만화방, 만화카페 등 소비자가 점포 안에서 만화책을 유료로 읽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하거나 책을 임대하는 사업체	
서적임대(대여) (만화부문)		각종 만화서적, 만화잡지 등을 임대만 하는 사업체 (정소 제공 안됨)		
만화 도소매업	만화 도소매업	만화 서적 및 잡지류 도매	각종 만화서적 및 만화 잡지류를 도매하는 사업체	
		만화 서적 및 잡지류 소매	각종 만화서적 및 만화 잡지류를 소매하는 사업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 정의	
음악 산업	음악제작업	음악 기획 및 제작업	음반 및 음원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업체(CP제외) (음원제작 및 관련 비즈니스업을 수행하는 업체)	
		음반(음원) 녹음시설 운영업	음반 또는 음원을 녹음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체	
	음악 및 오디오물 출판업	음악 오디오물 출판업	음악관련 악보를 출판하는 업체	
		기타 오디오물 제작업	기타 오디오물을 제작하는 업체(출판관련)	
	음반복제 및 배급업	음반 복제업	음반을 복제하는 사업체	
		음반 배급업	음반을 도소매업 사업체에게 배급하는 사업체	
	음반 도소매업	음반 도매업	음반을 도매하는 사업체	
		음반 소매업	음반을 소매하는 사업체	
	온라인 음악 유통업	인터넷/모바일 음악 서비스업	음원대리 중개업체로부터 음원을 양도받아 인터넷과 모바일로 서비스하는 사업체	
		음원 대리 중개업	음원권리자로부터 음원의 권리를 양도받아 온라인상으로 중개하는 사업체	
		인터넷/모바일 음악 콘텐츠 제작 및 제공업(CP)	음원을 제작하여 모바일 음악서비스 업체 및 인터넷 음악서비스 업체에 제공하는 사업체	
	음악 공연업	음악공연 기획 및 제작업	음악공연(뮤지컬, 대중음악, 클래식, 오페라, 전통공연 등)을 기획 및 제작하는 사업체(단, 연극은 제외)	
		기타 음악공연 서비스업	음악공연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체(티켓발매 등)	
	노래연습장 운영업	노래연습장 운영업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춘 사업체	
	게임 산업	게임 제작 및 배급업	게임 제작 및 배급업	게임을 기획, 제작, 배급하는 사업체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인터넷 또는 시디롬 등에 의한 컴퓨터 게임을 제공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체(PC방)
		게임 유통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	컴퓨터가 아닌 전자게임기를 갖춘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체(싱글플레이 포함)
	영화 산업	영화 제작, 지원 및 유통업	영화 기획 및 제작	일반 영화를 기획 및 제작하는 사업체(일반 영화/제작)
영화 수입			해외 영화를 수입하는 사업체	
영화제작 지원			일반 영화제작에 관련된 필름가공, 필름의 편집, 더빙, 필름검사 등 제작 후 서비스를 하는 사업체	
영화 배급			일반 영화 배급권을 획득하고, 영화관, 방송사 및 기타 상영자에게 배급하는 사업체	
디지털온라인 유통업		극장 상영	실내 또는 야외에 영사시설을 갖추고 영화를 상영하는 사업체	
		영화 홍보 및 마케팅	일반 영화를 홍보 및 마케팅하는 사업체	
		DVD/블루레이 제작 및 유통	영화를 DVD/블루레이 형태로 제작유통하는 사업체	
디지털온라인 유통업	온라인 배급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영화를 배급하는 사업체		
	온라인 상영	인터넷/모바일을 통해 영화를 서비스하는 사업체		

제1부, 조사 방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 정의
애니메이션 산업	애니메이션 제작업	애니메이션 창작 제작업	창작 애니메이션 기획 및 직접 제작하는 사업체
		애니메이션 하청 제작업	애니메이션을 외주제작, 주문제작 및 재하청하는 사업체
		온라인(인터넷·모바일) 애니메이션 제작업	인터넷용 및 모바일용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사업체
	애니메이션 유통 및 배급업	애니메이션 유통, 배급 및 홍보	극장용, 방송용, 홈비디오용 애니메이션을 유통, 홍보, 마케팅 및 홍보하는 사업체
	온라인 애니메이션 유통업	온라인 애니메이션 서비스업 (인터넷, 모바일)	애니메이션을 인터넷 및 모바일로 서비스하는 사업체(애니메이션만 해당)
방송 산업	지상파 방송	지상파방송 사업자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의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체(TV, 라디오)
		지상파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사업자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 사업체(지상파 DMB)
	유선방송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다채널방송을 행하기 위한 유선방송국 설비를 관리·운영하며 전송·선로설비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체(종합유선)
		중계유선방송 사업자	지상파방송을 중계 및 송신하는 사업체(중계유선)
	위성방송	일반위성방송 사업자	인공위성의 무선설비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무선국을 관리·운영하며 이를 이용하여 방송을 행하는 사업체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 사업자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을 행하는 위성방송 사업체
	방송채널사용사업	방송채널사용 사업자	지상파방송 사업자,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또는 위성방송 사업자와 특정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대한 전용사용계약을 체결하여 그 채널을 사용하는 사업체(일반, 홈쇼핑, 데이터)
	방송영상물제작업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재정적인 지원이나 제작·설비 등을 방송 사업자 측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TV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사업체
인터넷 영상물 제공업	인터넷프로토콜TV(IPTV)	초고속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제공되는 양방향 텔레비전서비스 사업체(KT의 o!eh TV, SK브로드밴드의 B TV, LG의 U+ TV)	
	IPTV 콘텐츠제공 사업자(CP)	IPTV용 콘텐츠를 제작하여 인터넷프로토콜TV 업체에 제공하는 사업체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 정의	
광고 산업	광고대행업	종합광고대행	광고물을 광고매체에 광고하는 업무를 총괄대행하는 사업체로 광고주와의 포괄적인 계약으로 광고 대행업무를 수행하며 이에 관련된 특정업무를 자체인력이나 다른 업체에 의뢰하여 수행	
		광고매체대행	광고주나 광고대행사를 대신하여 광고지면이나 광고시간을 구입해주는 업무를 하는 사업체	
	광고제작업	인쇄광고제작업	신문, 잡지 등 각종 인쇄광고물을 제작하는 사업체	
		영상광고제작업	방송, 영화, 동영상 클립 등 영상광고물을 제작하는 사업체	
		광고사진스튜디오	광고를 목적으로 제작된 사진 촬영, 신문, 잡지, 포스터 광고 촬영	
	광고전문서비스업	브랜드컨설팅	CI, BI, 패키지를 포함하는 기업이나 브랜드의 상징 등을 제작하는 사업체	
		마케팅조사	마케팅 활동의 기획·수정 및 평가를 위해 내부 및 외부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사업체	
		PR(Public Relations)	조직이나 개인이 그들의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공중의 이해와 호감을 얻고자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의 업무(홍보, PR, 행사 기획, 홍보물제작 등)를 전문으로 행하는 사업체	
		SP(Sales Promotion)	판매를 촉진하는 직접적인 광고를 대행하는 사업체(매체에 하는 광고가 아님)	
		전시 및 행사대행업	각종 전시회 및 행사를 기획·조직하는 산업활동, 전시장 행사와 관련된 전반적인 책임을 맡아 종합적으로 구성·연출하는 사업체도 포함.	
		인쇄업	인쇄	각종 광고용 인쇄물을 인쇄하는 사업체(광고를 인쇄업)
	온라인광고대행업	온라인종합광고대행	광고주를 대신해서 온라인 광고물을 기획하고 제작하며, 제작된 광고물을 전달하기 위해 매체와 접촉하여 집행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체 온라인 광고는 노출형, 검색형 등이 있음.	
		온라인광고제작대행	각종 온라인 광고물을 제작하는 사업체	
		온라인광고매체대행	광고주나 광고대행사를 대신하여 온라인 광고지면을 구입해주는 업무를 하는 회사	
	옥외광고대행업	옥외종합광고대행	인쇄, 그림 또는 전자적 방식 등의 전시광고물을 기획·제작하여 옥내외 간판 또는 차량, 상점 등 전시공간에 전시구조물을 게시하는 사업체	
		옥외광고제작대행	인쇄, 그림 또는 전자적방식 등의 전시광고물을 기획·제작하는 사업체	
	캐릭터 산업	캐릭터 제작업	캐릭터 개발 및 라이선스업	소설,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에 등장하는 독특한 인물이나 동물의 모습을 디자인하여 라이선스를 받는 사업체(캐릭터 디자인)
			캐릭터상품 제조업	캐릭터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고 캐릭터를 포함시켜 제조 하는 사업체(캐릭터상품 제조)
		캐릭터 상품 유통업	캐릭터상품 도매업	캐릭터라이선스 비용이 지불된 캐릭터상품을 도매하는 사업체(모자, 귀걸이, 넥타이, 머리핀, 손수건, 브로치, 양말 등 포함)
			캐릭터상품 소매업	캐릭터라이선스 비용이 지불된 캐릭터상품을 소매하는 사업체

제1부, 조사 방법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 정의	
	e-learning업	e-learning 기획업	유아, 초중고, 성인 등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온라인/스토리지 저장형 학습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사업체(온라인 학습정보 서비스 기획)	
		e-learning 인터넷/모바일 서비스업	인터넷과 모바일로 온라인/스토리지 저장형 학습프로그램을 서비스하는 사업체(온라인 학습정보 서비스 기획)	
		인터넷/모바일 e-learning 제작 및 제공업(CP)	온라인/스토리지 저장형 학습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서비스 사업체에 제공하는 사업체(CP)	
		에듀테인먼트 기획 및 제작업	교육의 효과를 얻을수 있도록 고안된 학습용 게임, 멀티미디어도감, 비디오 교재 등의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체(오락성을 가미한 학습정보 기획 및 제작업)	
지식 정보 산업	기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기타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1차 자료를 수집 및 조합하여 일정 포맷에 따라 가공된 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하여 전자매체로 제공하는 사업체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한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광고, 캐릭터, 이력서비스 제외)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인터넷에서 검색, 커뮤니티, 전자메일,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통해 금융, 생활정보, 뉴스 등 이용자 제작콘텐츠 및 디지털화된 다양한 정보를 매개하는 사업체	
	가상세계 및 가상현실업	스크린골프 시스템 기획 및 제작업	스크린 골프 시스템을 기획 및 제작하는 사업체	
스크린골프장 운영업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업체		
기타 가상세계 및 가상현실 기획 및 제작업		3차원 영상 등을 통해 디지털로 가상 환경을 만들어 사용자가 가상세계에서 현실 세계와 유사한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하는 사업체		
콘텐츠 솔루션 산업	콘텐츠 솔루션업	저작물	디지털콘텐츠를 제작 및 편집하기 위해 사용되는 저작도구(영상, 게임, LMS, e-learning 등)(CG 제외)	
		콘텐츠보호	유무선 네트워크 상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사용을 막고 유통 과정 중 발생하는 콘텐츠의 불법 사용을 추적하기 위한 솔루션(DRM 등), 콘텐츠 보호	
		모바일솔루션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제공되는 콘텐츠 서비스를 위한 모든 서비스 및 플랫폼(MMS/ SMS의 문자서비스, 모바일 멀티미디어 전송 관련 서비스 및 모바일플랫폼)	
		과금/결제	웹이나 모바일 네트워크에서 콘텐츠 이용 요금을 부과하고 징수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든 솔루션(신용카드결제, 휴대폰 소액결제 등)	
		콘텐츠관리시스템(CMS)	온라인 상의 모든 콘텐츠를 대상으로 생산, 유통, 삭제, 업데이트 등을 자동으로 관리해주는 솔루션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네트워크에 여러 대의 캐시서버(임시저장장치)를 설치하고, CP가 제공하는 영화, 음악, 게임 등의 콘텐츠를 이 캐시서버에 미리 옮겨 놓고 수요가 있을 때, 사용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전송속도를 향상시키고 데이터 손실을 막아주는 솔루션	
		기타	콘텐츠 저장과 검색, 도구 등 디지털콘텐츠 검색, 디지털방송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솔루션 및 웹에이전스 등 용역 및 서비스	
		컴퓨터그래픽스(CG) 제작업	컴퓨터그래픽스(CG) 제작업	영화, 광고, 게임 등 분야의 영상 제작 과정에서 컴퓨터그래픽스 기술을 사용하여 영상을 보정 및 창작하는 사업체(Computer Graphics)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 정의
공연산업 (음악공연 제외)	공연업	공연기획 및 제작업	콘텐츠 저장과 검색 도구 등 디지털콘텐츠 검색, 디지털방송을 위해 사용되는 모든 솔루션 및 웹에이전스 등 용역 및 서비스

※ 「콘텐츠 산업통계」 기본 업종 분류표 외 분야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체계 정의
디자인산업	디자인업	전문디자인업	인테리어, 제품, 시각 디자인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등
사진	촬영 및 처리업	사진촬영 및 처리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촬영 업 등
소프트웨어 (S/W)	소프트웨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ICT융합	ICT융합	ICT융합	IT기술과 문화예술·콘텐츠산업 융합관련 업. 미디어아트, 관광, 한류콘텐츠, 스토리텔링 등 융합분야

※ 같은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본 계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지원제외 업종을 정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지원제외 업종의 예 : 불건전 영상게임 관련, 도박·주류·담배 관련, 공공행정, 국방·사회보장 행정, 국제 및 외국기관 등